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[별지 제72호서식]

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)

제 목: 의견서

아래 사건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제4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.

사 건 번 호		
피의자	성 명	
	주 민 등 록 번 호	
	주 거	
죄 명		
구속이 필요한 사유		
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사유		

○ ○ 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